



건설업을 영위하다 보면 소송 및 행정처분 등에서 법률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법률용어는 일상의 생활용어와 다르기 때문에 그 뜻을 정확히 알고 업무처리를 해야만 실수가 없다. 본지는 법률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흔히 사용되는 법률용어 해설'을 게재하고 있다.[편집자주]

■ 고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 재결청·경유절차·청구기간 등을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 통지

자기 의사나 어떤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사법상 자기의 의사를 나타내는 의사통지와 어떤 사실을 나타내는 관념통지가 있으며, 의사표시와 다른 점은 그 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는 점이다. 행정법상으로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에 대하여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정행위이다.

■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공갈죄이다. 본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공갈이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畏怖心)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협박

광의의 협박은 사람에게서 공포심을 일으킬 목

적으로 상대방에게 해약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해약의 고지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일어났는가는 문제로 하지 않는다. 최협의를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약을 고지하는 것이다. 협의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도,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약의 고지가 있을 것을 요한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본죄는 침해범이므로 본죄의 객체인 사람은 해약의 고지에 의하여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정신적 능력이 있음을 요한다. 여기서 협박은 협의의 협박이라 할 수 있다.

■ **공기업**

일반적으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출자회사를 통칭하여 공기업이라고 한다.

■ **정부투자기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정부투자기관은 대부분 개별법률(예.LH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다.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 **정부출자기관**

일반적으로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한 기업체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

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을 말한다. 또한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대신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을 적용하는 기업체도 정부출자기관에 포함된다.

㉡ 50% 미만 출자 :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50% 이상 출자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출자회사**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이 자본을 출자한 기업체를 말하며, 재투자기관이라고도 한다.

㉢ 한국토지신탁, 뉴하우징, 고속도로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단

■ **정부출연기관**

각 개별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 기관소요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는 기관을 말한다.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은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자본을 기초로 사업을 운영하여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경우 설립하는 반면, 정부출연기관은 공공성이 강한 업무(예. 안전진단)를 수행하기 때문에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수밖에 없어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출연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설립한다.

㉣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